



##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9. 11. 17.] [서울특별시조례 제7183호, 2019. 5. 16., 제정]

서울특별시 (계약심사과) 02-2133-3303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산하 발주부서가 공사 또는 물품제조·구매에 적합한 특정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발주부서 내에 일시적으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.

1. "발주부서"란 공사 또는 물품제조·구매의 발주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.
  - 가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본청 안에 같은 영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과 및 담당관
  - 나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
  - 다. 「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」에 따른 시의회사무처
  - 라.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(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)
  - 마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
  - 바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적용대상인 출연기관(이하 "출연기관"이라 한다)
2. "특정기술"이란 공사 및 물품제조·구매 발주 시 업체명·모델명·규격·사양·공법·신기술·특허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이나 공법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특정제품·특정공법 등을 말한다.
3. "재료원가"란 동일 특정제품의 구성 물품 가격의 합계금액(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)을 말한다.
4. "순공사원가"란 공사원가계산서(또는 설계내역서)에 따른 재료비, 노무비, 산출경비의 합계금액(제경비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)을 말한다.

**제3조(심사 대상 및 범위)** ① 심사대상 특정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사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- 가.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 원 초과
  - 나. 동일 특정공법의 공중별 순공사원가 합계가 1억 원 초과
2. 물품제조·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- 가.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·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 초과
  - 나. 모든 특정제품의 제조·구매금액 합계가 1억 원 초과

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「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한 신기술
2. 관련 특정기술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기술
- ③ 그밖에 심사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정한다.

**제4조(시장의 책무)** 시장은 산하 발주부서가 공사 및 물품제조·구매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특정기술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5조(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)** ①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심사를 요청하기 전 해당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에 대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하여 특정기술 선정심사를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5명 이상(제3조제1항의 제1호와 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명 이상으로 한다)으로 구성하되,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의 수를 과반으로 한다.

1. 위원장

가. 시 본청 및 자치구: 실·본부·국장

나.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: 기관장(다만, 서울시립대학교는 행정처장, 상수도사업본부는 부본부장, 도시기반

시설본부는 국장, 한강사업본부는 총무부장)

- 다. 시의회사무처: 사무처장
- 라. 공사·공단 및 출연기관: 기관장 또는 본부장급 이상
- 2. 내부위원: 해당 사업분야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(발주부서 공무원은 제외한다)
  - 가. 시 본청 및 사업소(3급 이상): 4·5급 공무원
  - 나. 시 사업소(4급 이하) 및 자치구: 5·6급 공무원
  - 다. 공사·공단: 시 본청 상당 준용
  - 라. 출연기관: 자치구 상당 준용
- 3. 외부위원: 특정기술분야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
  - 가.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
  - 나. 해당분야 법인·단체 등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
  - 다.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  - 라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사(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를 포함한다) 이상의 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
  - 마. 「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」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
  - 바. 「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른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
  - 사.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
-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운영을 총괄하되 안전심사를 위한 평가와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.
-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해당 사업 발주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.
- ⑤ 위원회는 안전 발생 시마다 실·본부·국 또는 기관단위로 구성·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.
-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
**제6조(위원회 기능)**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해당 사업에 적합한 특정기술을 최종 선정한다.

- 1. 특정기술 필요여부
- 2. 특정기술 성능 및 품질 우수성
- 3. 특정기술 가격 적정성
- 4. 특정기술 현장적용성 및 유지관리성
- 5.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선정심사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③ 그 밖에 특정기술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
**제7조(선정심사 의의)** ①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적용 가능한 특정기술들을 조사하여 심사대상 특정기술 후보군(최소 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3개 미만인 경우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한다)을 마련하고 이들 중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특정기술의 최종 선정을 규칙이 정하는 신청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의뢰한다.

-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공사 사업에 대한 심사대상 특정기술 후보군을 마련함에 있어 「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해당 공사에 적용 가능한 공법 중 건설신기술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.

**제8조(협조요청 등)** 위원회는 제6조의 원활한 심사와 현장실사를 위해 해당 특정기술의 개발자나 보유자 또는 해당 사업의 업무관련 공무원 등을 위원회나 현장실사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**제9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**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척하여야 한다.

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- 2.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- 3.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, 용역(하도급을 포함한다), 감정 등을 한 경우
- 4.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-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.

**제10조(회의록 등의 비치)** 발주부서의 장은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, 회의록은 속기 또는 녹음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. 다만, 현장실사의 경우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다.

**제11조(비밀준수)** 위원회의 위원 및 그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2조(수당 등)**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3조(시행규칙)**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제7183호,2019.5.16>

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[시행 2019. 11. 17.] [서울특별시규칙 제4307호, 2019. 10. 10., 제정]

서울특별시 (계약심사과) 02-2133-3303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선정심사 의뢰)** 「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7조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특정기술 선정심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특정기술 선정심사 요청서 : 별지 제1호서식
2.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안건 개요 : 별지 제2호서식
3. 특정기술 선정 사전검토서 : 별지 제3호서식

**제3조(기술검토)**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위원회 개최 시 심사위원에게 제2조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요청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위원회 소집 등)**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안건명,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개최통지서를 개최 7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보내야 하며, 제2조의 관계서류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내용 및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에 따라 통지기간을 조정하거나 관계서류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**제5조(심사결과 조치)** 위원장은 특정기술 선정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청렴서약서의 제출)** 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7조(회의록 등 비치)** 위원회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심사의결서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4307호,2019.10.10.>

이 규칙은 2019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